
산업기능요원제도 개선 건의

2018. 4. 2

- 건의처 : 병무청
- 참 조 : 산업지원과

산업기능요원제도 개선 건의

I. 현황

- 산업기능요원제도는 『병역법 제2조 17』에 따라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(병역법 제36조)에 산업기능요원을 편입해 해당 분야에 복무토록 하는 제도로, 중소기업 인력 수급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.
- 제도도입의 목적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산업현장에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인력을 제공받는 한편,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청년들에게는 안정된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임.

II. 문제점

-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제도의 장점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음.
 - * 창원상공회의소가 관내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업체의 94.7%가 ‘산업기능요원제도를 유지하거나 더욱 확대해야 한다’고 응답
- 하지만 제도도입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고 있음. 더욱이 병역법과 대통령령 등 관련법의 개정 과정이 근로자측(산업기능요원)의 권리와 자율권에 치중되는 반면, 기업의 지원정책이나 자율권은 축소되고 있다는 점도 애로로 지적되고 있음.
- 첫째, 현재 산업기능요원의 전직가능 기간은 6개월로 되어 있으며, 이 기간이 지나면 자유로이 이직이 가능해 제도도입의 목적인 기업 생산성 향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.
 - 이직 절차에 있어서 병역지정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최소한의

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아, 산업기능요원이 전직가능 기간을 악용할 소지가 다분한 실정임.

실제로 6개월 복무 직후 전직하게 되는 경우, 실무교육과 적응기간 후 생산성으로 연결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기업입장에서는 오히려 손실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음.

* 창원산업기능요원의 전직가능 기간은 2001년 2년에서 1년으로, 2014년 1년에서 6개월로 복무기간 단축과 더불어 차츰 짧아져왔음.

- 둘째,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출장, 파견, 근무처 변경과 사업장 이전 및 사업규모 변화 등에 따른 기록과 통보 절차가 까다롭고 문서화 되어 있어 복무관리자의 업무량과 책임소재가 과다하다는 것도 애로요인으로 꼽힘.

Ⅲ. 건의

-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산업기능요원제도의 도입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, 기업이 최소한의 고용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산업기능요원의 전직가능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주시길 건의드립니다.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출장, 파견, 근무처 변경과 사업장 이전 및 사업규모 변화 등에 따른 기록과 통보절차를 사회복무제도의 도입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간소화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병역지정업체의 재량권을 부여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.

2018. 4. 2

창원상공회의소 회장 한철수